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법률 제정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47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필요성	4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10
2. 조문별 검토	12
가.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및 보호 범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2
나. 퍼블리시티권의 성격 및 존속 기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16
다. 이용허락, 권리의 제한 및 공정이용(안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20
라.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규율(안 제12조 및 제18조)	24
마. 권리 구제 및 책임 제한(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27
※ 참고자료	3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현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1. 5.

다. 회부연월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은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인정받아 독립된 경제재로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사람의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속이나 보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균형있게 규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 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안 제6조).
- 라.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함(안 제7조).

마.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초상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기간 및 방법, 조건의 범위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나 정보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자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퍼블리시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간주함(안 제15조).

자.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표시를 제거·변경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제정안은 개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그 이용과 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초상재산권’ 또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identity)를 광고·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음.¹⁾

본래 실재하는 인물의 용모나 캐릭터에 관한 권리는 비경제적인 인격권의 보호 대상이었으나, 실재 인물의 상품 선전력이나 고객 흡인력 등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그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개념이 논의되어 왔음.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1953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²⁾가

1) 오승종, 「저작권법(제6판)」, pp. 1095~1096

2)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202 F.2d 866(2d Cir. 1953), cert. denied, 346 U.S. 816(1953).

등장한 이후, 판례와 주(州)법³⁾을 통하여 독립된 권리로 발전하여 왔으며, 영국·독일·일본 등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불법행위법이나 일반적 인격권 이론 등을 통하여 성명이나 초상의 상업적 무단 이용을 규율하고 있음.⁴⁾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는 인격표지(人格標識)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보호와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별도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판결들이 다수 나오고,⁵⁾ 학설도 퍼블리시티권을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등⁶⁾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점차 축적되어 온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는 방식에 관하여 「저작권법」 개정⁷⁾을 통한 권리 보호 방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3) 미국 애리조나주 등 20여개 주는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 중 성문규정이 있는 주도 캘리포니아 등 10여개 주에 이름. 퍼블리시티권은 주법(州法) 또는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할 뿐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는 않음.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방향” IP Policy, 2015. 4.

4) 최승재,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연구”, 2024.7.

5) 관련 판례는 첨부한 [참고2] 참조

6)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 10.; 정재훈,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창작과 권리, 1998.

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개정⁸⁾을 통한 금지행위 규율 방안,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명명하여 「민법」 개정⁹⁾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입법 경로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 온 바 있음.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로 개인의 초상·음성 등이 광고·마케팅·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음성 모사, 가상 인물 생성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7) 2005. 11. 9.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6호)

<주요내용>

가. 저작물의 정의를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창작 부산물까지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하여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초상재산권을 신설함(안 제53조의2 신설).
다. 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생존하는 동안으로 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생존하는 자의 사망시점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함(안 제53조의5 신설).
라. 초상재산권의 양도·행사 등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53조의6 신설).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제2조제1호 타목 신설).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제2022-383호)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이에 따라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권리의 귀속 및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현행 법체계상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¹⁰⁾이나 초상권·성명권 보호를 통하여 일정부분 사후적 구제는 가능하고, 202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¹¹⁾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권리자의 사망 후 보호 기간, 권리의 양도 가능성, 이용허락의 범위, 침해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0)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에 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초상, 성명,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그 귀속, 보호기간, 이용허락, 제한 및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법률상 권리로 정립하고 그 이용 질서를 체계화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임.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현행 법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할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권리 범위와 보호 방식에 관하여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급증하고 있는 초상등 무단 이용 및 디지털 모사물 확산 문제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권리 보호와 초상 등의 활용 간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며,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제정안의 취지와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반면, 지식재산처는 제정안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함에 따라 일상적인

SNS 게시, 단순 창작활동, 영상 촬영 등까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분쟁이 급증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제시함. 또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규정하면서도 양도·압류·담보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민법상 재산권의 처분성과의 관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상표권·디자인권 등 기존 지식재산권과 경합하는 경우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정의하고 그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본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와 국가의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귀속, 보호기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초상등의 이용허락과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및 공정이용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이용에 대한 표시의무 및 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침해정지, 손해배상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4조(보호받는 초상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퍼블리시티권)
제7조(보호기간)
제8조(이용허락)
제9조(퍼블리시티권의 소멸)
제10조(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제11조(공정 이용)
제12조(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

제13조(분쟁의 알선·조정, 감정)

제14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5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6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7조(손해액의 인정)

제18조(과태료)

제19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부칙(시행일)

2. 조문별 검토

가.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및 보호 범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상등”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사람의 초상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콘텐츠(「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디지털 모사물이 아닌 것에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을 통하여 상당히 변형한 것을 포함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받는 초상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 2. 대한민국이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이 아니라도 그 외국에서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의 초상등

제 정 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는 「저작권법」 및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기본 개념과 체계를 설정하는 규정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로 명확히 하고, 그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안 제2조는 “초상등”을 사람의 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중이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초상등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콘텐츠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련 업계¹²⁾에서는 “초상등” 및 “디지털 모사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실제와 구

12) 이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이티비씨(주)

분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추상적·포괄적 표현은 판단 주체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상 혼란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디지털 모사물의 범위에 관하여 “디지털 모사물이 아닌 것에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을 통하여 상당히 변형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특정인의 초상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어, 창작물이나 배경적·부수적 이용까지 디지털 모사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함.

안 제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단순한 사적 권리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법익으로 인식하여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됨.

안 제4조는 보호 대상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을 원칙적 보호 대상으로 하면서, 조약에 따른 외국인 및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중 대한민국 내 상시 거주자의 초상등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 콘텐츠 유통과 외국인 연예인·창작자의 국내 활동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되며, 향후 구체적 적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약과의 관계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5조는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 「저작권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설정하되, 기존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 규율 체계와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청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권리 경합 시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규제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중복 규제 또는 법 적용 순서에 관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 제5조는 기존 법률에 따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현행 지식재산권 체계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퍼블리시티권의 성격 및 존속 기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제 정 안
제6조(퍼블리시티권) ① 사람은 누구든지 <u>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u>(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초상등을 이용하여 상품·서비스·사람·단체 등을 홍보하거나 판촉하는 행위 2. 초상등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초상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이용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는 <u>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u>. ④ 제1항에 따른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u>상속된다</u>. 제7조(보호기간) ①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초상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u>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u>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9조(퍼블리시티권의 소멸) 퍼블리시티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자가 그 권리의 <u>상속</u>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u>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u>한 경우 2. 퍼블리시티권자가 <u>상속인 없이 사망</u>하여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안 제6조·제7조 및 제9조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존속 기간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써 퍼블리시티권을 가지도록 하되, 해당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퍼블리시티권자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상속되도록 함.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퍼블리시티권자가 상속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함.

먼저, 안 제6조는 퍼블리시티권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재산적 권리로 규정하면서도, 해당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로 정하고 있음. 이는 퍼블리시티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처분 가능성을 제한하여 인격표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한 입법 구조로 볼 수 있음.

한편, 지식재산처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권리로 규정하면서도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재산권의 처분성 및 책임재산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계약 및 권리 관리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6조 및 제7조는 퍼블리시티권자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을 권리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일신전속적인 인격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보고, 사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사람의 사망 이후에도 그의 초상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하여 유족들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전에 사용허락을 받아 그의 초상등을 이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임.

관련 업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개인의 인격표지와 밀접하게 결합된 권리라는 점에서 사망 후 30년¹³⁾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며, 특히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재현이나 공익적 콘텐츠 제작과의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사보도나 정보전달, 연구,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이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13)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정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대상이 되거나 성대모사, 모창, 비평 등 표현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콘텐츠의 창작, 전기나 평전의 방식으로 창작에 이용하는 경우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9조는 퍼블리시티권자가 상속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의 사후 존속 여부에 대한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권리의 무주(無主) 상태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권리 행사 주체의 특정 및 이용허락 방식과 관련하여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며, 권리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이용허락, 권리의 제한 및 공정이용(안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제 정 안

제8조(이용허락) 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초상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기간 및 방법, 조건의 범위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퍼블리시티권자는 미성년자일 때 체결한 초상등의 이용허락 계약을 성년이 되었을 때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퍼블리시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나 정보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연구, 교육, 비평, 논평, 풍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사람이 성대모사, 모창 등 흥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콘텐츠의 창작에 이용하는 경우

6. 전기(傳記)나 평전의 방식으로 창작에 이용하는 경우

7. 상품이나 서비스에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및 홍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초상등을 이용한 콘텐츠가 담긴 유형물이 해당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그 유형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공정 이용) ① 제10조의 경우 외에 초상등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초상등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공중이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3.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초상등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안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는 퍼블리시티권의 이용 방식과 그 제한, 공정이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초상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기간·방법·조건의 범위에서만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허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일 때 체결한 초상등의 이용허락 계약은 성년이 되었을 때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자의 이용허락을 중심으로 초상등의 이용 관계를 규율하면서, 이용허락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재양도 및 재허락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퍼블리시티권이 인격표지와 밀접하게 결합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통제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용허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다단계 계약 구조가 일반화된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에서 계약 관계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복수의 사업자가 관여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권리 행사 및 이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퍼블리시티권자가 미성년자일 때 체결한 초상등의 이용허락 계약을 성년이 되었을 때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체결된 계약까지 일률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계약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10조는 시사보도, 정보전달, 연구·교육·비평·풍자, 성대모사·모창,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콘텐츠 창작 등 일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퍼블리시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된 콘텐츠가 담긴 유형물은 별도의 허락 없이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권리 보호와 공익적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11조는 안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초상등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

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그 판단 기준을 열거함.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탄력적 판단이 가능하게 하려는 규정으로 보임.

한편, 지식재산처는 안 제10조에서 열거한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정보전달”, “부수적 이용”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형식상 보도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나 수익화된 영상에 우연히 포함된 제3자의 초상·음성 이용 등과 관련하여 허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안 제11조의 공정이용 규정에 대하여도 판단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사안에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퍼블리시티권 분쟁과 기존 지식재산권 또는 부정경쟁행위 규제가 병존하는 경우 적용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규율(안 제12조 및 제18조)

제 정 안
제12조(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 ①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해당 디지털 모사물을 수정·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u>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u>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 의하여 표시되거나 고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되거나 고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거하거나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대상과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12조는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안 제18조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및 제18조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초상등을 모사한 콘텐츠가 실제 인물의 발언·행위로 오인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이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인물과 구별이 어려운 이미지·음성·영상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통해 이용자의 혼동을 예방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사전에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임.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표시 기준이 플랫폼·매체·콘텐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표시의무의 구체적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표시의무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 범위,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세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아울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

조¹⁴⁾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면서 ‘디지털 모사물’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의무의 내용·방법 및 책임 주체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사업자에 의하여 표시되거나 고지된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각 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현행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나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권리 구제 및 책임 제한(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 정 안

제13조(분쟁의 알선·조정, 감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분쟁의 알선·조정, 감정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과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분쟁”으로, “저작권의 침해”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각각 본다.

제14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침해로 보는 행위) 퍼블리시티권자나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본다.

1. 퍼블리시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2. 공중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1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침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 정 안

②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5. 침해자의 재산상태
6.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7. 디지털 모사물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표시 여부

제17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6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초상등을 복제·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3조의3까지 및 제1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등”은 “초상등”으로, “저작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본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 구제 수단과 분쟁 해결 절차,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책임 귀속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13조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분쟁의 알선·조정 및 감정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¹⁵⁾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 분쟁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저작권법」 상 알선·조정·감정 절차를

15)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13조의2(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18조(조정비용 등)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19조(감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준용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안 제14조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자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안 제15조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퍼블리시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중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이용하는 행위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보도록 규정함.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청은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권리로 설계하면서도 명예훼손이나 오인 유통과 같은 인격적 침해 요소를 함께 규율하는 구조는 관련 인격권 보호 법제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권리 체계 간 중첩 또는 적용 관계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안 제16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퍼블리시티권 행사에 따른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행위가 고의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는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해 추정 규정과 법원의 상당손해액 인정 규정을 두고, 고의적인 침해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9조는 초상등의 복제·전송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¹⁶⁾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3조의3까지 및 제142조¹⁷⁾를 준용하도록 규정하

16)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17)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고 있는바, 이는 이용자가 게시·전송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디지털 모사물 해당 여부 및 퍼블리시티권자의 특징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적 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해외사례

국가명	내용		
미국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각 주마다 보호 여부가 다르고, 보호를 규정한 주 상호 간에도 보호대상 및 면책 범위의 차이 존재		
	주	보호대상	면책 내용
	캘리포니아	- 성명(The name) - 목소리(The voice) - 서명(The signature) - 사진(The photograph) - 초상(Likeness of a person)	- 연극, 서적, 잡지, 음악적 창작물, 시청각물,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미술품의 원본, 정치적이거나 뉴스 가치가 있는 자료에서의 이용 - 사실적 또는 비사실적인 오락물, 드라마, 문학작품, 뮤지컬에서의 이용 - 전 항에 따라 허용된 이용에 대한 광고 또는 상업적인 보도 - 뉴스, 기업활동, 스포츠 중계, 정치적 캠페인에서의 이용
	네바다	- 성명(The name) - 목소리(The voice) - 서명(The signature) - 사진(The photograph) - 초상(Likeness of a person)	- 상업적인 후원을 받는 자료의 일부분에 해당되나, 상업적인 후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생실연에서의 모방, 연기, 가장 등에 이용된 경우 - 뉴스, 기업활동, 스포츠 중계, 출판과 관련된 이용의 경우 - 상업적인 후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연극, 도서, 잡지, 기사, 신문기사, 영화,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적 창작물, 오디오, 시청각 프로그램에서 이용된 경우 - 정부가 관광 촉진,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단, 상업적인 후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함) - 미술품의 원본과 관련된 이용(단, 권리자의 동의를 요하는 multiple editions는 제외함) - 이 법에 따라 이미 허용된 이용을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인 보도
	오클라호	- 성명(The name) - 목소리(The voice) - 서명(The signature) - 사진(The photograph) - 초상(Likeness)	- 뉴스, 기업활동, 스포츠 중계, account, 정치적 캠페인에서의 이용 - 상업적인 후원 또는 상업광고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상업적인 후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상업적인 대중매체에서의 이용

	마		※ 권리자 사후 면책범위 ○ 연극, 서적, 잡지, 신문기사, 음악적 창작물, 전시,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이용인 경우(광고 또는 상업적인 보도는 제외됨) ○ 정치적 또는 뉴스 가치가 있는 자료에서의 이용인 경우 ○ 미술품의 원본과 관련된 이용 ○ 이 법에 따라 이미 허용된 이용을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인 보도
	인디애나	○ 성명(The name) ○ 목소리(The voice) ○ 서명(The signature) ○ 사진(The photograph) ○ 초상(Likeness of a person) ○ 이미지(The image) ○ 독특한 외형(Distinctive appearance) ○ 몸짓(Gestures) ○ 버릇(Mannerisms)	○ 문학작품,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서의 이용 ○ 정치적 또는 뉴스 가치가 있는 자료에서의 이용 ○ 일반적이거나 대중적인 관심사항인 사건 또는 주제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이용 ○ 미술품의 원본과 관련된 이용(미술작품의 복제는 제외함) ○ 문학작품을 비디오 게임으로의 이용 ○ 범죄 사건에 대한 출판 및 보도에서의 이용(Son of Sam laws)
	플로리다	○ 성명(The name) ○ 목소리(The voice) ○ 초상화(The portrait) ○ 사진(The photograph) ○ 기타 초상(Other Likeness)	○ 출판물, 자료, 신문, 잡지, 서적, 뉴스보도,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이용(단, 이 경우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대중의 관심 사항에 대한 사실적인 보도 또는 소개의 일부로서 타 뉴스 매체 또는 출판물에서의 이용(단, 이 경우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권리자가 성명, 초상, 사진 등을 최초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해당 문학, 음악, 예술작품의 재판매 또는 배포를 위해 성명, 초상,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 알려지거나 특정되지 않은 일반인(a member of the public)의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민법】 제3344조 (a) 타인의 이름, 음성, 서명, 사진 또는 초상을, 그 사람의 사전 동의 없이(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품·상품·물품에 사용하거나 그 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또는 제품·상품·물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판매, 판매 촉진 또는 구매 유인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용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d) 본 조의 적용에 있어, 뉴스, 공공 사안 또는 스포츠에 관한 방송이		

나 보도, 또는 정치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름, 음성, 서명, 사진 또는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a)항에 따라 동의가 요구되는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네바다 주법】

제597.790조2. 개인의 성명, 음성, 서명, 사진 또는 초상을 다른 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인 또는 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 (a) 상업적으로 후원 받는 자료의 일부분에 해당되나, 상업적 후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b) 생실연에서의 모방, 연기, 가장 등에 이용되는 경우
- (c) 뉴스, 기업활동, 스포츠 중계 출판과 관련된 이용의 경우
- (d) 상업적인 후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연극, 도서, 잡지 기사, 신문 기사, 영화, 라디오프로그램, 텔레비전프로그램, 음악적 창작물, 오디오 시청각 프로그램에 이용한 경우
- (e) 예술의 원작과 관련한 이용(단, multiple editions이 있어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
- (f) 이 항에 허용된 이용을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인 보도
- (g) 정부가 관광 촉진,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단, 상업적인 후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함)

【오클라호마 주법】

제1449조(타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무단 사용) A 고의로 개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성명, 음성, 서명, 사진, 초상을 제품, 상품 또는 판매품에 판매를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D 이 조문의 목적상 뉴스, 기업활동, 스포츠방송, 관련 계정, 정치적 캠페인에서 활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 상업적 후원 또는 상업광고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상업적인 후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상업적 대중매체에서의 이용은 A 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F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 케이블 방송, 광고판 및 대중교통 광고를 포함하여 광고에 사용된 매체의 소유자 또는 직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 투명성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입법에 이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래 캘리포니아주 등 개별 주 차원에서 관련된 입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

제22757.2조 (AI 탐지 도구의 제공)

(a) 적용 대상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AI 탐지 도구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미지·영상·음성 또는 이들의 결합 콘텐츠가 해당 제공자의 GenAI 시스템에 의해 생성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

을 것

(2) 콘텐츠에서 탐지된 시스템 출처 데이터를 출력할 것

(3) 콘텐츠에서 탐지된 개인 출처 데이터는 출력하지 아니할 것

(4) (A) (B)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이 접근 가능할 것

(B) GenAI 시스템의 보안 또는 무결성에 대한 입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접근 제한을 둘 수 있음

(5)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로 연결되는 URL을 제공할 수 있을 것

(6) 제공자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도구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지원할 것

(b) 적용 대상 제공자는 AI 탐지 도구의 효율성과 관련된 이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관련 피드백을 도구의 효율성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c) 적용 대상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B)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AI 탐지 도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보유하는 행위

(B) (i) 제공자는 이용자가 연락에 동의(opt-in)한 경우에 한하여, (b)에 따른 피드백 제출 이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보유할 수 있음

(ii) 위 정보는 AI 탐지 도구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이 조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탐지 도구에 제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행위

(3) 이용자가 제출한 콘텐츠로부터 개인 출처 데이터를 보유하는 행위

제22757.3조 (명시적·잠재적 표시의무)

(a) 적용 대상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시적 표시(manifest disclosure)를, 그 제공자의 GenAI 시스템에 의해 생성 또는 변경된 이미지·영상·음성 또는 이들의 결합 콘텐츠에 포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콘텐츠가 AI 생성 콘텐츠임을 식별할 것

(2) 명확하고 눈에 띄며, 콘텐츠 매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것

(3)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영구적이거나 제거가 극히 곤란할 것

(b) 적용 대상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잠재적 표시(latent disclosure)를, 그 제공자의 Gen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영상·음성 또는 이들의 결합 콘텐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의 정보를 직접 또는 영구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전달할 것

(A) 적용 대상 제공자의 명칭

(B) 콘텐츠를 생성 또는 변경한 GenAI 시스템의 명칭 및 버전 번호

(C) 콘텐츠 생성 또는 변경의 일시

(D) 고유 식별자

(2) 해당 표시가 제공자의 AI 탐지 도구로 탐지 가능할 것

(3) 널리 수용되는 산업 표준과 일치할 것

(4)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영구적이거나 제거가 극히 곤란할 것

(c)

(1) 적용 대상 제공자가 제3자에게 GenAI 시스템을 라이선스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b)에 따른 표시를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약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2) 적용 대상 제공자가 제3자 라이선스 이용자가 해당 표시 기능을 상실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인지 시점부터 96시간 이내에 라이선스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제3자 라이선스 이용자는 (2)에 따라 라이선스가 철회된 이후 해당 GenAI 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2757.5조 (적용 제외) 이 장은 비이용자 생성 비디오게임, 텔레비전, 스트리밍, 영화 또는 인터랙티브 경험만을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인터넷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럽 연합	2024년 제정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 따르면, 합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물이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딥페이크를 구성하는 이미지, 음성,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되었다는 것을 공개해야 함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50조(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대한 투명성 의무) 2. 범용인공지능시스템을 포함하여 합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산출물이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공자는 관련 기술표준에 반영되는 다양한 콘텐츠 종류의 특수성 및 제한, 구현비용, 일반적이라 하는 최신 기술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그 기술적 해법이 유효하고 상호운용 가능하고 견고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표준 편집을 위한 보조 기능을 수행하거나 배포자가 제공한 입력데이터나 그 의미론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를 탐지, 예방, 수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딥페이크를 구성하는 이미지, 음성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공개한다. 이 의무는 범죄를 탐지, 예방, 수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에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콘텐츠가 명백히 예술적, 창의적, 풍자적, 허구적 유사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항에서 정하는 투명성 의무는 해당 저작물의 전시 또는 향유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생성 또는 조작된 콘텐츠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일반 대중에게 공익 문제를 알릴 목적으로 공표되는 텍스트를 생성 또는 조작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텍스트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공개한다. 이 의무는 범죄를 탐지, 예방, 수사 또는 기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인적 검토 또는 편집 통제 절차를 거치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콘텐츠의 공표를 위한 편집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국	2025년 공표된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지 방법> 등 규정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바, 네트워크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표시 의무와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규제, 그리고 플랫폼과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해 규정함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지 방법】 제4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생성 및 합성 서비스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 합성 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 및 합성된 콘텐츠에 다음 요건에 따라 명시적인 식별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i) 텍스트의 시작, 끝 또는 중간의 적절한 위치에 텍스트 프롬프트 또는 일반 기호 프롬프트를 추가하거나 대화형 시나리오에서 텍스트 주변에 눈에 띄는 프롬프트를 추가한다. (ii) 오디오의 시작, 끝 또는 중간의 적절한 위치에 음성 안내 또는 오디오 리듬 안내를 추가하거나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눈에 띄는 안내를 추가한다. (iii) 이미지의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안내 메시지를 추가한다. (iv) 비디오의 시작 화면과 재생 영역 주변의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안내 메시지를 추가한다. 비디오의 끝부분과 중간 부분의 적절한 위치에도 눈에 띄는 안내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다. (v) 가상 장면을 표시할 때 시작 화면의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안내 아이콘을 추가하고 가상 장면의 연속 서비스 중에도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안내 아이콘을 추가한다. (vi) 기타 생성된 합성 서비스 시나리오는 자체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눈에 띄는 프롬프트와 레이블을 추가해야 한다. 생성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복사 및 내보내기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할 때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명확한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합성 콘텐츠를 생성하는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암묵적 식별자를 추가해야 한다. 암묵적 식별자에는 합성 콘텐츠의 속성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및 기타 제작 요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생성된 합성 콘텐츠에 디지털 워터마크와 같은 암묵적인 식별자를 추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파일 메타데이터는 특정 인코딩 형식에 따라 파일 헤더에 포함된 설명 정보로, 파일의 출처, 속성 및 목적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 제6조.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합성 콘텐츠 배포를 규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파일 메타데이터에 암묵적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파일 메타데이터에 생성 및 합성 콘텐츠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 게시된 콘텐츠 주변에 눈에 띄는 안내 표시를 추가하여 대중에게 해당 콘텐츠가 생성 및 합성 콘텐츠임을 명확히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ii) 파일 메타데이터에서 암시적 식별자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생성된 합성 콘텐츠라고 선언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생성
----	---

	된 합성 콘텐츠일 수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된 콘텐츠 주위에 적절한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iii) 파일 메타데이터에 암묵적 식별자가 없고 사용자가 생성된 합성 콘텐츠라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명시적 식별자 또는 기타 생성 및 합성 흔적을 감지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생성된 합성 콘텐츠로 의심되는 것으로 식별하고 게시된 콘텐츠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라벨을 추가하여 해당 콘텐츠가 생성된 합성 콘텐츠일 가능성이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v) 필요한 식별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게시된 콘텐츠에 생성된 합성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성된 합성 콘텐츠의 속성 정보, 배포 플랫폼의 이름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등을 파일 메타데이터에 추가해야 한다. 제7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은 상장 또는 온라인 접속 신청을 심사할 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가 AI 생성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은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서비스 계약서에 합성 콘텐츠 식별자 생성 방법, 스타일 및 기타 사양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사용자가 관련 식별자 관리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시적 식별이 없는 생성된 합성 콘텐츠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계약을 통해 사용자의 식별 의무 및 사용 책임을 명확히 한 후 명시적 식별이 없는 생성된 합성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신자에 대한 정보 등 관련 기록을 법률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가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배포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합성 콘텐츠를 생성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식별 기능을 사전에 신고하고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식별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본 조치에 명시된 생성된 콘텐츠 식별자를 악의적으로 삭제, 변조, 위조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상기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부적절한 식별자를 통해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도 아니된다.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2

관련 판례

판례 번호	판결기관 (판결일자)	판결 주요내용
94 카합 9230	서울지방법원 (1995.6.23.)	○(부정) 소설에서 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공인인 이상 가족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함 - 문학작품에 성명, 사진 등의 사용은 상업적 이용이 아니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 안 됨
2000나 42061	서울고등법원 (2002.4.16.)	○(부정)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 - 다만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2006 가합 6780	서울동부 지방법원 (2006.12.21.)	○(긍정)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증대함에 따라 해석상 독립적 권리로 인정
2007 가합 2393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7.11.28.)	○(긍정)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산업계에서 널리 인정됨 - 인격적 표지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 -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
2010 카합 245	서울서부 지방법원 (2010.4.21.)	○(긍정) 유명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 -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 -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
2012 가단 64664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2.10.9.)	○(긍정)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고객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 - 이는 당해 유명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며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을 보유
2013나 2022827	서울고등법원 (2014.4.3.)	○(긍정) 자신의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 - 또한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2013 가합 18880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6.4.27.)	○(긍정)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 -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퍼블리시티권 인정 가능
2016 가합 33976	서울서부 지방법원 (2017.4.27.)	○(긍정)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과 초상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나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 - 광고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무상사용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무단으로 초상이 담긴 메뉴판, 입간판, 전단지,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가맹점,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
2019 가단 530470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20.7.21.)	○(부정)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 근거 없이 그 필요성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 개념 인정 곤란 - 권리 성립 요건, 양도성 및 상속성, 보호대상 및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인정 가능
2020 가단 5295598	서울중앙 지방법원 (2022.1.12.)	○(긍정) 원고는 가수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보유 -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가 자신의 성명, 초상의 사용을 승낙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
2020나 73954	서울중앙 지방법원 (2022.8.17.)	○(부정)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 근거 없이 그 필요성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 개념 인정 곤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며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단 사용행위를 제재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추가된 것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21 가단 75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2.3.)	○(부정)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필요성은 수긍되나 성문법주의 내지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아직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선행판결들의 대체적 입장
2022 가단 5252939	서울중앙 지방법원 (2023.12.19.)	○(부정)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 인정 곤란 -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인정 가능 * 사안에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긍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